의안번호	제437호
의결연월일	2017. 12. 7

-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20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1. 22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2. 7

제236회 예산군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교육체육과장 : 이 무 희)

가. 제안이유

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(2017. 12. 31.)에 따라「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」과 위·수탁협약기간을 갱신하여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협약기간 : 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
시설명	위 치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위탁기간(예정)
예산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	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(청소년수련관내)	예산군청소년 복지재단 (이사장 부군수)	2014. 1. 1.	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
*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설립일 : 2013. 6. 25.

○ 운영예산 : 384,192천원(국비 35.6%, 도비 6%, 군비 58.4%)

○ 위탁사항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○ 이 동의안은 예산읍 벚꽃로 214 청소년수련관내에 위치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산군청소년 복지재단에 다시 위탁하고자

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❍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❍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　　음